

조효제. 2018. “인권 실현의 통합적 접근.” 『인권연구』 1(1): 37-71.
Cho, Hyo-Je. 2018. “An integrative approach for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1(1): 37-71.

[일반논문]

인권 실현의 통합적 접근*

조 효 제**

국문초록

본고는 기존에 통용되던 인권 실현의 방법론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28조는 인권 실현을 위해 ‘어떤 사회적·국제적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두 가지 상이한 경로로 분화되었다. 하나는 오늘날 주류 인권담론의 지위를 획득한, 규범설정을 통한 기준이행 접근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인권 실현을 위한 선행조건과 환경을 중시하는 접근방식이다. 후자는 실체적 권리옹호 활동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시적·구조적 프레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권 옹호자들에게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생각되곤 한다. 더 나아가, 그런 차원은 인권운동과는 별개이고 인권운동이 관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그러나 본고는 거시적 조건형성을 위해 인권운동·연구가 관여할 수 있고,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권운동·연구는 통상적 방식에 의한 권리옹호 활동에 더해, 근대 민주정치 기획의 재발견, 근본원인 분석, 언어·인식의 변화, 역사적 분석, 그리고 연대적 사회운동과 국제 인권담론의 토착화를 모색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을 취함으로써 인권이 실현될 개연성을 높일 수 있다.

주제어: 인권 실현, 사회적·국제적 질서, 기준이행, 조건형성,
세계인권선언

* 이 논문은 2017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문정책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건설적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성공회대학교. 사회학.

목 차

- I. 들어가면서
- II. 두 종류의 사회적·국제적 질서
- III. 기준이행과 조건형성의 통합—인권운동·연구의 관점에서
- IV. 나오면서

I. 들어가면서

1948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의 28조는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어떤 사회적·국제적 질서(a social and international order)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강조추가). 선언의 27조까지 실체적 권리를 나열한 후, 그러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필수조건을 강조했다. 이 점에서 세계인권선언 제정자들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28조는 그것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권운동과 연구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구체적 개별권에 대한 관심은 많아도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관심은 적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인권의 실체적 권리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어떤 사회적·국제적 질서’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고, 더 나아가 기존에 통용되던 인권 실현의 방법론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집필되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우선 지난 70년 동안 ‘어떤 사회적·국제적 질서’가 두 가지 방식으로 분화되어 온 점, 그리고 그 중 첫째 방식이 지배적 위치를 점했고 둘째 방식은 망각되어 온 점을 설명한다. 그리고 인권옹호 과정에서 두 번째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논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

두 접근방식을 통합할 수 있는 입론을 제시함으로써 친인권적 사회적·국제적 질서의 수립을 모색하려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II. 두 종류의 사회적·국제적 질서

1. 기준이행 접근방식

현대 인권에 있어 전세계 차원의 인식·제도 실행체계를 구축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유엔은 초기부터 인권달성의 방법론으로 두 차원을 암묵적으로 상정했다. 첫째 차원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인권 규범을 국제조약의 형태로 제도화하고 그것을 전세계에 확산 시킴으로써 ‘국제법의 창시자로 추대’되는 그로티우스식 국제적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것이다(조기성, 2001: 38). 세계인권선언에서 예시되었던 여러 개별적, 실체적 권리들(substantive rights)은 그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국제인권기준과 국제인권레짐을 통해 성문화·제도화되었다(박찬운, 2015; 정인섭, 2008).

이 같은 접근방식은, 국제인권법 체제에 가입한 당사국들에게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실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일국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인권침해 문제를 조약기구들이 다룰 수 있도록 하며, 국제인권규범이 각국 사법체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실, 2014). 또한 인권정책과 운동에 있어 표준적 기준을 설정하고, 제도설계의 준거를 제시하며, 인권 논의에 있어 정당성의 논거를 제시하고, 인권교육·훈련의 내용을 제안한다(조효제, 2016a: 234).

이런 접근에 따르면 국제인권법 기준에 따라 구축된 국제인권체제 그 자체가 인권실현을 위한 ‘사회적·국제적 질서’가 된다. 이런 접근 방식은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인권을 실현하는 정통적이고 표준적 방

법론으로 통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런 방식을 ‘기준이행 접근방식’이라 칭한다.

2. 조건형성 접근방식의 특징

기준이행 접근방식과 다른 차원에서 유엔과 국제사회는 인권을 달성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이차대전 종전 후 유엔 창설부터 세계인권선언의 선포 그리고 국제인권장전의 핵심인 국제인권규약이 제정될 때까지의 20여년 간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예를 들어, 1945년 유엔 헌장의 전문(前文)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국제연합의 인민들은 우리 일생에 두 번이나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인류에 가져 온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 및 가치, 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정의와 조약 및 기타 국제법의 연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에 대한 존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들을 확립함으로써**,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할 것을 결의하였다.”(강조추가) 즉 유엔의 목적이 평화, 인권 및 발전인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의원칙과 국제법을 준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들이 존중될 수 있는 심층적 조건을 형성하겠다고 한 것이다.

국제법 차원에서 인권을 가장 먼저 성문화한 1950년의 유럽인권협정 전문에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다. “전세계 정의와 평화의 기초가 되는 본질적 자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러한 자유가 **효과적인 정치 민주주의** 그리고 그러한 자유를 가능케 하는 인권을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유지된다는 깊은 믿음을 재확인한다.”(강조추가) 효과적인 민주정치라는 조건이 갖춰져야 시민들이 본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1966년 유엔에서 제정된 두 개의 원조 국제인권법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자유인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되는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강조추가)

인권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구체적 개별권리들이 지켜질 수 있는 어떤 조건들—선행 요인, 호의적 환경, 인권보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 체제 등—이 충족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국제인권법 체제가 곧 인권친화적인 ‘사회적·국제적 질서’라고 봤다면 굳이 가장 중요한 국제인권법인 국제인권규약에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들’이라는 진술을 덧붙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 인권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강조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차대전 중 발생한 미증유의 인권유린 사태가 파시즘·나치즘이라고 하는 거시적 정치환경 속에서 발생했으므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국제적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식처럼 통용되었고, 친인권적 혹은 반인권적 사회적·국제적 질서에 대한 확실한 가치판단이 존재하였다. 이것이 18세기형 자연권과 이차대전 후의 현대 인권을 구분하는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두 번째 방식을 ‘조건형성 접근방식’이라고 칭한다. 조건형성 접근방식은 개별 인권침해의 해결을 넘어, 인권이 실현될 확률적 개연성을 높이는 조건을 찾으려 한다. 또한 인권을 둘러싼 여러 차원의 권력과 사회구조·행위주체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직접적으로 설정되는 행위적 인과관계를 넘어 어떤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을 탐색하는 설명적 인과관계를 중시한다. 이

러한 조건에는 역사·사회구조, 이데올로기, 국제관계상의 권력정치, 사회심리, 국가의 성격과 민주주의의 질 등 다섯 차원이 포함된다(조효제, 2015a; 2016a).

3. 조건형성 접근방식이 망각된 이유

실체적 권리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로서 조건·여건·환경이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인권 실현의 조건은 안타깝게도 주류 인권담론에서 오랫동안 망각되어 왔다. 그 이유로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국제인권법 규범이 인권달성을 위한 일종의 정전적 지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조효제, 2016a). 국제인권운동은 국제인권법을 전세계적으로 확산시키면 인권이 실현될 것이라고 전제하여 오랫동안 인권조약 비준운동을 중요한 캠페인으로 전개했었다(Amnesty International, 1988: 273-277). 스티븐 홉굿은 국제인권법, 국제인권법정, 규범, 국제기구들이 인류 전체를 위한 인도주의의 향방을 좌우하는 주류적 관점이 되었다고 지적한다(Hopgood, 2013). 이것과 더불어 법적 모델, 특히 형사사법적 모델을 통해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염원이 대단히 강했다(Bassiouni, 1993).

역사사회학적으로 인권에 접근하는 최근의 학계동향은 이런 측면에서 과거 국제인권운동이 취했던 방식을 비판한다. “유럽과 북미에서 복지국가가 강화되던 시점인 1948년에 선포되어 인권의제의 토대를 이루었던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사회적 보호를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문서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잔혹한 정권에 희생당한 이들의 ‘인권’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미국과 서유럽의 인권운동가들은 사회적 시민권 문제를 망각해 버렸다. 이 시기 대표적 인권단체였던 국제앰네스티는 투옥이나 고문과 같은 이슈에만 한정해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마찬가지로 휴먼라이츠워치도 경제적·사회적 권리

옹호 활동에 관심이 없었다”(Moyn, 2018: 13).

냉전 시기에 각 진영이 서로 다른 종류의 인권을 선호했던 점도 이런 추세에 한 원인이 되었다. 미국은 주로 자유권을, 소련은 주로 사회권을, 비동맹권은 주로 발전권을 옹호했는데 그러한 선별적 지지가 발생한 애초의 원인—이념상의 가치관에 따라 인권에 대한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점—에 대한 관심은 희박했다(foot, 2010). 또한 냉전의 시대상 때문에 탈정치적 인권관이 팽배해졌다. 그 결과 주류 인권담론에서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차원보다 구체적인 개별 침해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인권운동의 특징점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득세하였다.

4. 조건형성 접근방식의 재발견

위에서 보았듯 냉전 시기에 각 진영별로 인권의 강조점이 달랐다. 자유권을 주창했던 서구의 학계에서는 자유권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인권유린 상황의 연구를 통해 결과적으로 인권의 무게중심이 자유권에 있다는 식의 논리를 강화하였다.

인권상황이 극히 열악한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인권유린을 방어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이때 생명권, 노예화, 고문, 인신 상해, 강제노동 등 ‘신체안전권’(physical integrity rights)의 확보 여부가 인권의 시급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Cingranelli and Richards, 1999). 신체안전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기준이행 접근방식을 통해 사건을 일단 해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신체안전권이 유린당할 정도의 비상사태가 아닌, 적어도 형식적 차원에서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통상적 상황에서는—이때에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만—인권기준을 이행하는 전통적 방식과, 인권실현을 위한 조건형성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냉전 시기에 전세계 사회운동은 노동, 민중해방, 계급해방이라는 마스터 프레임 속에서 활동을 벌였다. 그런데 냉전형 이념대결이 사라진 후에는 인권이 전체 사회운동의 마스터 프레임 역할을 하게 되었다(공석기, 2013). 인권이 사회운동의 마스터 프레임이 되었다고 해서 세계의 모든 문제들이 인권의 이름으로 일거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집중 캠페인의 대상이 되었던 개별 인권 영역에서 중요한 발전이 있기도 했지만(예: 고문근절, 노예적 종속),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다(예: 변형된 고문, 유사 인신매매).

이런 맥락에서 인권의 장점이라고 여겨졌던 많은 특성들—개별성, 구체성, 사법적 전문성, 탈이념적 보편성, 탈정치적 진보주의—이 본질적인 사회변화를 추동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연구들이 나왔다(아래 III-2절 참조). 이런 변화 속에서 인권운동은 ‘인권’만을 요구하는 운동방식의 한계를 직시하고,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구조적·제도적·경제적·문화적인 조건들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Moyn, 2010). 기준이행 접근방식을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행 접근방식과 조건형성 접근방식을 어떻게 최적화하여 통합할 것인지가 인권의 핵심적 질문으로 ‘재발견’되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재발견은 1993년 유엔이 개최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발표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 13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와 국제기구는 NGO와 협력하여 국내·지역·국제 차원에서 온전하고 효과적인 인권의 향유를 보장할 수 있는 호의적 조건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모든 인권침해와 그 원인들, 그리고 그러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을 제거해야만 한다.”(강조 추가) 이 조항은 세계 인권운동에서 조건형성 접근방식의 복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다.

기준이행과 조건형성 접근방식을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있다. 원래 사회권 영역에서는 사회과학적으로 인권을 파악하는 접근이 전제되어 있고, 개별 소송건으로 사회권을 이해하기보다는 인구집단 전체에 대한 정책으로서 이해하기 때문에 사회권 자체에 이미 조건형성 접근방식이 내재되어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자유권이 기준이행 접근방식에 가까운 반면, 사회권은 조건형성 접근방식을 많이 차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는 조건형성 접근방식은 사회권적 정책의 차원보다 더 거시적인 것이며, 사회권에만 해당되는 개념도 아니다.

예를 들어, 비엔나선언에서 인권의 보장조건을 강조하고, 권리향유를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자고 한 점은 분명 조건형성 접근방식의 재발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언은 전세계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신자유주의, 지구화(세계화), 불평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생태에 대한 서술도 전무하다는 한계를 보인다. 본고에서 주장하는 조건형성 접근방식이란 이런 점들까지 포함하는 방식을 뜻한다.

후술하겠지만 자유권 역시 거시적인 국제질서의 변동이나 민주주의의 질적 변화와 같은 조건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요컨대, 자유권이든 사회권이든 기준이행 접근방식과 조건형성 접근방식이 통합될 때에만 장기적·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 싶다.

조건형성 차원은 인권운동의 바깥에서 발생하는 거시적 변동이므로 인권운동과 별개의 차원에서 전개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현대 한국 사회의 인권은 냉전 반공주의 하에서 심각하게 왜곡되어 왔고,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쟁이 인권운동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제였다(조효제, 2015b). 그런데 2018년 남북한, 미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격한 변화는 인권운동과 직접적 관련 없이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남북한 전체 인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조건에 대해 인권운동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은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인권 옹호자들이 조건형성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는 인권운동·연구가 조건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Ⅲ. 기준이행과 조건형성의 통합—인권운동·연구의 관점에서

1. 근대 민주정치 기획의 재인식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실체적 권리들은 약 70가지 정도인데 인권 운동가나 학자들은 자신이 특별히 관심을 갖는 개별권리에 초점을 맞춰 활동 및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향은 국제인권규약이 제정된 이래 개별 주제를 다룬 국제인권규범들—예를 들어, 인종, 여성, 고문, 아동, 난민, 이주노동자, 장애, 강제실종 등—이 속속 출현하면서 가속화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 인권의 원천이 된 계몽주의의 근대 인권은 원래 시민혁명이라는 급진정치적 기획으로 탄생했다(Goodhart, 2016). 근대 시민혁명의 요체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왕 또는 극소수의 성직계급이나 귀족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시민권적 사회계약론의 정신에 있다. 근대 인권은 이러한 주권재민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된 발견적 도구였다. 주권재민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공적 시민’(공민)이 되려면 적어도 이러저러한 자격과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별권리들이 예시된 것이었다.

즉, 인간이 주체적 시민으로서 국가주권의 공동 담지자가 되려면 우선 생명과 자유와 소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노예가 되어선 안 되고, 고문을 당해도 안 되고,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사상과 양

심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어야 하고,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야 했다. 프랑스혁명 이래 근대 인권에서 규정한 모든 개별권리들은 주권재민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조건이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지지대로서 제시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주인의식에 기반을 둔 참여를 통해 자기가 속한 정치공동체를 더욱 민주적이고 공동선적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바탕에 깔려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개별권리를 옹호했던 것이다. 물론 이런 의지가 없다고 해서 개별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전제를 부정한다면 근대 인권의 본래적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만에 하나, 시민권적 사회계약의 정신과 분리하여 개별권리만을 독립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민주 정치체(democratic polity)의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주의가 훼손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국가·세계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개별권리만 지키겠다고 한다면—이런 경우에도 법·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개인권리는 여전히 존중해 주어야 하겠지만—그런 식의 인권은 자칫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단자적인 이익 수호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일찍이 마르크스가 자유주의적 인권개념을 비판했던 이유도 인권이 개별적 이기성의 발현으로 귀결될 위험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조효제, 2007: 137-174).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민권적 사회계약으로서의 근대 인권에는 두 차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속한 사회와 세계의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논의에 참여하고 발언하고 선거에 투표하는, 즉 주권재민을 실현하기 위한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공적 시민의 차원이 있다. 시민들이 인권을 민주적 참여권으

로 이해하고 그것을 행사할수록 민주정치의 결손으로 인해 인권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줄어든다. 이렇게 본다면, 인권에 미온적일 개연성이 높은 대통령을 선출해 놓고 그 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저항하는 것보다, 그런 후보에게 처음부터 투표하지 않는 것이 보다 유의미한 인권운동일 수 있다.

민주적 참여권이 적극 발휘되는 공동체에서는 설령 인권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사회적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법 앞에서의 만인평등 원칙이 잘 구현되면 시민들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높은 정부가 내놓는 조치들에 대해서 설령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안이라는 신뢰가 있으므로 그것을 수용할 수가 있다.

이차대전 중 발생한 홀로코스트는 나치의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으로부터 기인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인권운동이 주된 해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인종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은 중요하다. 하지만 인종차별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홀로코스트를 일으킨] 나치즘은 독일의 인종주의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나 인종차별주의는 악선전과 무책임한 언행이 난무하게끔 되었던 경제적·국가적·이념적 위기상황이 없었더라면 국가적 정책으로까지 등장하진 못했을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그러한 위기상황 또는 그러한 언행에 애초부터 연루되지 않겠다는 자세가 모든 사람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반유대주의자였기 때문에 나치당원이 된 독일인보다, 나치당원이 되었기 때문에 반유대주의자가 된 독일인이 더 많았음을 기억하라.”(Hayes, 2017: 285, 강조추가). 민주시민으로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할 조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하지 않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인권의 이름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한다면 효과도 적고, 훨씬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민주적 참여권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intractable) 개별권리 침해의 문제를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하고 주장해야 한다. 여기서 ‘고질적’ 인권침해라는 말은, 민주정치가 고도로 일상화되어 개별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특유한 권리침해와 차별의 문제를 가리킨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 여성, 고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탈북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 혐오표현 등은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는 사회에서도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사안이므로 이런 문제들은 당연히 ‘인권’의 이름으로 호명되어야 한다.

한번 더 강조하지만, 두 차원의 인권—주권재민 정신에 입각한 참여권, 그리고 개별적 권리침해에 대응하는 인권옹호—을 ‘깎지처럼 끼워서’(coupling) 실천하는 것이 근대 인권의 기본정신임을 기억해야 한다. 제임스 니켈은 중요한 정치적 결정 중 대부분은 개별 국가의 지도자와 유권자들이 통상의 민주적 방식으로 다루면 되고, 입법과 정책 결정 행위에 있어 중대한 제한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 권리의 요구기준만을 인권의 이름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Nickel, 2010: 6).

민주적 참여권과 개별 권리침해의 시정을 요구하는 인권요구가 서로 ‘깎지가 풀린 채’(decoupling) 행사된다면 근대 시민혁명의 원래 취지에 어긋나며, 민주체제의 선순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점을 교육에 적용해 보면, 인권을 그 자체로만 다루는 세분화된 인권교육보다, 시티즌십에 해당하는 민주시민교육, 더 나아가 세계시민교육의 큰 틀 내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함께 다루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5; 장은주, 2017).

2. 근본원인 분석

인권문제를 다룰 때 침해가 일어나는 근본원인에 대한 질문과 분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사법적 접근방식을 취하곤 한다. 권리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피해 상태를 파악하고, 가해자를 색출하고, 가해행위가 어떤 법규에 저촉되는지 혹은 법규의 미비로 발생했는지를 파악하고, 가해자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배상 혹은 보상을 하고, 더 나아가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이 방식은 인권의 침해행위에 대해 사법적 정의로써 사안을 종결(closure)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런 접근방식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법론만 존재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재적 비평(immanent critique)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다(Evans, 1998; Frezzo, 2015). 내재적 비평이란 어떤 사회문제를 그것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단순히 반대·비판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것을 엄밀하고 체계적인 사회과학적 틀로써 분석하고 고찰하는 것이다. 인권에서 내재적 비평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 사회적 고통을 발생시키는 근본원인(root cause)을 찾아내어 사회과학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 개인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개인을 법적으로 구제하는 것을 넘어,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역사적, 구조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전통적·규범적, 경제적 근본원인들을 파악하면 가정폭력의 근저에 자리 잡은 뿌리 깊은 남성우월주의와 남성지배 사상, 구조적 특성, 계급적 함의, 가족제도의 유지와 경제적 요인간의 관계 등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런 분석을 거칠 때 고위험 인구집단의 예측, 조기경보 시스템의 확립, 인권 주창활동의 개입효과 제고, 장기적 예방정책 입안, 교육과 의식개선 방안 등을 체계

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인권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게 되면 인권은 더 이상 사법적 방식의 개별적 소송권이 아니라, 인간행동의 확률적 개연성을 좌우하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도모하는 거시적 사회정책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사회구조는 인간의 선택을 직접 결정하지는 않지만 “인간의 선택의 개연성을 결정”한다(지그문트 바우만, 스타니스와프 오비레크, 2016: 318). 그러므로 집합적 수준에서 인간행동이 발현되는 양상을 좌우하는 조건·여건·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사회과학적으로 인권을 다루는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 간, 집단 간에 발생하는 직접적 권리침해만을 인권문제로 이해하는 ‘행위중심의 인과관계’가 가진 한계는 대중적인 개입을 넘어 심층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지적 자원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노예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노예제는 20세기 초 이래 지구상 어디에서도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타인을 노예로 부리는 개인이나 집단은 국제법상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어 있다(케빈 베일스, 2003). 그러나 공식적으로 노예가 아니더라도 오늘날 실질적으로 예속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약 4천 만명에 달한다고 국제노동기구는 추산한다(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Walk Free Foundation, 2017).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2만 명 이주노동자 중 상당수가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되어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14).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 한국 정부의 고용허가제와 악덕 고용주의 문제를 흔히 거론하곤 한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허가제가 바뀌고 고용주들의 ‘악의’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심층적으로 파악하면 식민지배의 유산, 인종주의, 전지구적 불평등, 불균등한 개발 현실, 국제 정치경제적 역학, 전쟁과 난민, 국제적 노

동이주, 여성착취, 기후변화 등이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을 발생시키는 근본원인들이라고 흔히 지적된다. 이런 점들을 간과하고 제도상의 미비점이나 고용주의 비인도성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형태만 다른 유사한 성격의 문제가 지속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다.

최근 국제 인권학계에서는 기존 인권담론이 행위중심의 인과관계 연구에만 치중했던 한계를 인식하고 인권침해에 있어 근본원인 분석법(RCA)에 근거한 연구와 대안제시를 하기 시작했다. 수전 마크스는 인권에서 근본원인 분석을 소홀히 할 때 인권운동이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고 지적한다. 근본원인에 대한 인식 없이 문제해결에만 치중하면 형식적·절차적 해법, 보완적·보충적 조치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문제를 원래 발생시킨 책임주체인 국가에게 오히려 문제해결을 위임함으로써 해결범위를 축소시키고 시민사회를 국가의 제도적 메커니즘 내에 순치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Marks, 2011).

이와 더불어, 로버트 콕스가 국제관계를 분석하는 양대 조류로 설명했던 ‘문제해결 이론’과 ‘비판 이론’을 인권의 분석에도 원용할 수 있다. ‘문제해결 이론’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흔히 통용되는 사회관계와 권력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제도를 행동의 준거틀로 삼는다”(Cox, 1981: 128). 문제해결 이론은 개별적 문제에만 집중할 뿐 현존하는 사회적 틀과 제도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으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기존 사회관계와 제도의 하위영역 내에서 다룰 뿐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기성체제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어떤 문제를 그 시스템의 ‘상자 안에서’ 전문적 개입을 통해 처리하면 된다고 가정한다.

이와 반면, ‘비판 이론’은 기존의 세계질서 틀을 벗어나, 다시 말해 ‘상자 바깥에서’ 현 세계를 평가하려고 한다. 비판 이론은 “기성 제도와 사회·권력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것들이 과연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

을 제기한다.” 비판 이론 역시 어떤 구체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지만, 그 문제가 속한 세부 영역에만 관심을 국한시키지 않고 “원래의 부분적 문제가 속해 있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려고 하며, 부분과 전체가 함께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하려고 한다.”(Cox, 1981: 129).

최근 대법원 판사로 임용제청된 노동법 전문가 김선수 변호사의 사법고시 합격기는 비판이론의 관점에서 실정법의 토대 자체에 질문을 던진 좋은 예로 꼽힌다. “... 이미 기성의 사회질서 자체가 어느 정도 불평등하게 구조 지워졌을 때에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일까? 그 불평등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형성과정은 어떠한가? 기성의 사회체제는... 변화라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인가? 사법부의 임무가 법의 평등한 적용이라고 할 때 ‘법’ 자체는 이미 항상 공평타당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가?... 법과 정치적 권력 및 사회, 경제적 토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만약에 일정한 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법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할까?”¹⁾

인권침해 사안을 다룰 때 그것의 직접적 발생원인을 넘어 근본원인을 조사하려는 지적 태도와 관점을 가질 때 인권문제를 빙산의 일각만이 아니라 빙산의 저변까지 포함된 문제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3. 언어와 인식의 변화

근본원인 분석을 통해 인권침해를 설명중심의 인과관계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인권운동이 구체적으로 거시구조적 차원에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은 ‘구조’와 ‘주체행위’를 상호배타적인 실체로 오해한 것에서, 그리고 ‘구조’를 하나의 완결된 시스템과 동일시한 것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주체행위’

1) <<http://news.joins.com/article/20612037>, 강조추가> (검색일: 2018.2.14.)

는 마치 콘크리트 벽과 같은 강고한 ‘구조적 총체’ 속에 갇힌 채, 그것이 부과하는 속박으로부터 일방적인 영향을 받기만 하는 무기력한 실체로 이해되기 쉽다.

구조와 주체행위 간의 관계를 사회이론으로 정리한 기든스에 따르면 개인의 주체행위와 구조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구조와 주체행위는 행위자들의 ‘사회적 실행’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유동적이고 다이내믹한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은, 인간이 주체행위를 통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조를 생산, 재생산,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조가 역으로 인간의 주체행위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것이 변화할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본다(안소니 기든스, 1998). 인간의 행위와 구조가 일방적이 아니라 양방향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만들어지고 함께 변한다는 기든스의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을 형성하는 구조적 차원 또한 인간의 주체행위에 의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구조적 조건이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바깥에서 ‘주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고정불변의 상수로 간주해서 지레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인권에서 구조를 거론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생각되어 그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면서 목전의 ‘구체적’ 이슈만을 다루는 데에 치중한다면, 인권담론이 콕스가 말한 문제해결에 치중하는 ‘도구’와 같이 왜소화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자연스럽게 진화해 온 질서처럼 보인다 해도 그것 역시 특정한 역사과정 속에서 특정한 기획에 의해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질서임을 기억해야 한다(칼 폴라니, 2009).

기든스의 이론을 원용해서 본다면 어떤 인권문제에 직면하여 그것의 직접원인과 즉각적 문제해결 방안만을 강구하는 것을 넘어, 근본적 차원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것에 대해 의분을 표출하는 순간, 우

리는 이미 새로운 주체행위자로서 기존의 사회구조를 재형성할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움직임을 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고하며 언어는 사회구조가 인간에게 부여하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행위 주체들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현재의 사회구조를 승인하고, 그것을 언어표현상으로 계속 재생산할 때에는 현 체제가 유지된다. 그러나 현상 유지를 의식적으로 거부하면서 ‘새로운 언어’로써 그것을 표현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영구불변처럼 보이던 사회구조에 균열이 생긴다.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용할수록 철옹성 같이 보이던 사회토대에 의외로 빨리 변화가 올 수 있다.

근년 들어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큰 파장을 불러왔던 젠더평등을 둘러싼 투쟁—예를 들어, 언어적 진술·고백·증언이 중심이 되어 분출되었던 ‘미투 운동’과 같은—을 보라. 전통 규범이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는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되던 남성우월, 남성지배의 관행과 습속에 얼마나 심대한 타격을 가했던가. 세상을 새롭게 보는 전복적 언어를 도입하여 기존 체제를 변화시키고 재구조화하려는 시도는 문화운동의 영역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운동의 영역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

새로운 관점을 통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그것에 따른 사회구조 변화의 시작은 서로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생각하는 것과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떤 개입, 즉 세상을 바꾸는 행동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Zehfuss, 2014: 623).

이런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미디어, 영화, 엔터테인먼트, 사회관계망, 문화예술 등이다. 예를 들어, 어떤 영화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거부하는 내용이 코딩된 메시지를 발신하고, 관객들이 감독의 의도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영화 내용을 디코딩하여 받아

들일 때 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장애인의 고충에 직접 대응하는 개입(기준이행 접근방식)이, 장애인에 대한 대중의 인식변화(조건형성 접근방식)와 결합될 때에 장애인의 인권상황이 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거시적 차원의 사회변동은 흔히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다. 이 때문에 인권 옹호자들은 거시적 차원의 사회변동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세상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처럼 여기기 쉽다. 이런 회의감과 무력감은 세상의 변화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바이다. 그러나 인권의 현실을 통시적으로 비교해 보면 과거에 비해 오늘의 인권현실에 분명 변화와 개선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1987년 민주화 이전과 2018년 현재를 비교할 때 한국 사회의 객관적 인권지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형 인권문제가 해소된 자리에 새로운 유형의 인권문제가 들어서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권침해의 고통을 계속 가하기 때문이다. 인권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실제로 바뀐 것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인간에게는 부정성 편향(negativity bias)의 인지 성향이 있어서, 좋아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나쁜 것은 강렬하게 인지하곤 한다. 인권 감수성이 높을수록 이런 경향이 강하다. 역설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인권은 답보하고 있는 것처럼 감각되는 상태가 곧 인권 발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인 변화와 주관적인 불만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되는 긴장 속에서 인권이 끊임없이 발전한다(미셸린 이샤이, 2005). 그러므로 인권 옹호자들은 새롭게 대두된 인권문제 앞에서 불편함과 분노를 느끼는 자신의 모습 자체가, 과거형 인권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된 반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즉, ‘지금 여기’의 모순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

적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언어와 인식의 변화를 통해 인권이 개선되어 온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인권발전에 대해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을 필요가 있다.

4. 역사적 분석의 포함

인권문제를 다룰 때 역사적 차원의 분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구조란 결국 장기간에 걸친 일련의 주체행위들이 축적되고 재생산된 바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인권유린 사건에 시급하게 개입해야 하는 현장 활동가에게 역사적 분석까지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주문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학문적으로 인권을 분석하는 연구자들은 인권문제의 뿌리에 해당하는 역사적 차원을 반드시 다뤄야 한다. 그것을 통해 인권담론의 역사적 기원과 그것의 현실적 함의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정은, 2008). 구체적인 인권 쟁점이나 사례를 논할 때, 본격적인 역사적 분석이 어렵다면 적어도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배경설명이라도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와 있는 이주노동자 중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에 대해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특정 종교계에서 배척하고 혐오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종교자유와 인종평등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인권의 잣대를 적용하기만 하면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또는 그러한 혐오표현을 어떤 법적 조치나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금지시키면 해결될 수 있는가? 하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 제도적 해결의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는다(홍성수, 2018a).

혐오표현과 차별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시스템1 인지양식’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유사하다. 이런 인지양식은 어떤 현상에 대해 직관적, 즉각적, 충동적으로 정서를 표현하면서 경험칙으로써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지만 주관적으로 확신하는

‘해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인권을 다루는 인지양식은 ‘시스템2 인지양식’ 즉 합리적 인지양식에 더 가깝다. 이는 언어적, 추론적, 순차적, 논리적, 분석적, 영역보편적, 가설적, 추상적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조지프 히스, 2017; Evans, 2007). 시스템2 인지양식은 훨씬 더 긴 시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논의와 대안 마련에 적합하다. 그것을 위해 역사적 차원의 분석은 필수적이다.

알다시피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의 기원은 영국제국의 식민지배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우르와쉬 부팔리아, 2009). 영국이 인도 지배를 포기하고 철수를 준비하던 시기인 1945-47년 사이 영국은 인도가 영향력이 큰 아시아 대국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영국은 인도에 의도적인 ‘분할 통치’ 전략을 강화하기 시작한다. 무슬림계 주민들을 대표하면서 이슬람 독립국가를 창설하고 싶어 하던 지도자 무하마드 알리 जिना를 정치적으로 지원하고, जिना와 힌두계 사이의 경쟁과 불화를 은연중에 부추겼다. 또한 냉전 초기에 소련의 영향력이 인도로 남하하는 것을 막아 줄 군사외교적 보루로서 파키스탄의 전략적 가치를 영국은 적극 활용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에 와 있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출신 무슬림들의 상황은 20세기 전반까지 전세계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프로테스탄트 제국인 영국에 의한 식민통치의 잔재, 그리고 그것이 세계체제 내에서 개도국의 발전에 미친 부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에만 비로소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역사적 차원의 통찰이 인권 활동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우선 인권침해 사안을 가해자-피해자 간의 직접적 인과관계로만 환원시키는 단계를 넘어서, 인권문제의 근본원인이 얼마나 복잡하고 긴 인과적 사슬로부터 연유되고 변형되어 왔는지를 알게 해 준다. 그리고 인

간이 집합적 기억으로부터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 존재인지를 실감하게 됨으로써 피상적 해결책을 넘어 사람들의 인식과 감성구조에 근원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정책을 상상할 수 있다. 또한 대중에게 인권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 교육에 있어 중요한 계몽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계몽’이라는 말이 엘리트적이고 온정주의적 연상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그것을 경원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계의 복합적인 실상을 다소 어렵더라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의 장점은, 복잡한 요소들이 얽힌 인권문제를 왜도난마식의 법제적 조치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접근의 장점보다 크다. 인권문제의 근저에 깔려 있는 역사·사회적 현실의 다차원적인 복잡성과 모순성을 이해하는 계몽된 민주대중의 존재가 장기적으로 인권의 가장 안정된 지지 세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인권문제의 분석에 역사적 차원을 포함시켜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인권침해에 대해 경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분석을 제시한다고 해서 과거에 발생한 인권침해의 고통을 당장 소멸시킬 수 없고, 현재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도 없다. 그러나 과거에 어떤 조건, 과정, 작용-반작용을 거쳐 인권침해의 씨앗이 뿌려졌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미래 세대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지에 관해 중요한 방향성을 시사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총기관련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미국에서 총기규제를 어렵게 만드는 원천으로 연방헌법 수정조항 2조가 꼽히곤 한다. 무기제조업체들과 전미총기협회(NRA)가 이 조항에 의존해 총기규제 조치를 막는다는 지적이 정설처럼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 백인 정착민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인종청소’하고 그들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강탈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조항을 제정했다고 한다(Blanchfield, 2017). 처음부터 지배와 억압의 수단으로 출발한 제도로 인해 수백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살인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역사의 인과적 지속성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지향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구조적 문해능력은 그 어떤 국가행동계획(NAP)보다 더 중요한, 현재와 미래를 위한 장기적 인권행동계획의 또 다른 이름인 것이다.

타자를 지배하고 고통을 가했던 과거가 있는 가해자들은 인권침해의 역사적 분석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2015년 11월 13일 파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공격으로 일반시민 130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사건의 발생 원인으로 여러 측면을 꼽을 수 있지만 근본원인 중 하나로서 서구의 중동지배 역사, 특히 근년 들어 서구가 중동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정치적 이슬람주의를 급진화한 점을 들 수 있다(Pettinger, 2015). 당시 BBC뉴스는 13시간 동안 연속 생방송을 통해 사건을 보도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내보냈다. 하지만 서구의 중동 개입에 대한 반발이 동기가 되어 테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거론한 내용은 오직 63초에 불과했다. 전체 방송시간의 0.1 퍼센트만을 역사적 근본원인 분석에 할애한 것이다(Freedman, 2017).

식민지배와 종속, 분단, 냉전, 대규모 인권유린, 전쟁, 급속한 개발의 명암을 두루 경험했고 그것의 후유증을 현재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한국 사회는 인권문제의 역사·구조적 차원에 대한 문해능력이 높을 수 있는 지적·정서적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비판적 역사의식에 눈을 뜬 사람은 변화된 세계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숙고할 수 있고, 정치적 결정에 있어 비판적 잣대를 구사할 수 있으며, 강대국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넘어설 수 있는 객관적 시각을 은연중에 갖출 수 있다. 의식 있는 시민들의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거시적 변화의 단초가 나온다.

5. 사회운동들의 연대와 국제 인권담론의 토착화

인권운동은 수많은 전문영역으로 분화되어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인권의 각 세부영역 내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인권운동의 분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자연스런 현상이기도 하지만 인권의 거시적 조건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 어떤 사회문제도 개별적으로, 주변의 다른 조건들과 분리되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모든 문제들은 근본적 차원에서 서로 깊숙이 연결되어 있으며, 사회적 고통의 상호연결성을 인정하는 것이 인권학의 출발점이다.

현대 사회운동의 효시로 꼽히는 일차대전 시기의 반전운동에는 평화주의자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만이 아니라, 여성참정권자, 인권 옹호자, 인종차별 반대자, 흑인민권 운동가, 노동운동가, 반제 운동가 등이 참여함으로써 사회운동의 분화가 아니라 사회운동의 결집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준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이런 운동의 흐름은 1920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창설, 1940년대 남부지역에서의 프리덤라이드 운동, 1960년대 민권운동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졌다(Kazin, 2017).

20세기를 통틀어 사회운동은 구체적 쟁점과 상황에 따라 분화와 결집을 되풀이했는데, 큰 틀에서 보아 사회운동의 대규모 결집—이론과 실천 양면에서—이 일어났을 때 사회전체 차원에서 심대한 변화가 초래된 경우가 많았다(에이프릴 카터, 2007). 특히 전지구화된 오늘의 세계에서 ‘변혁의 연대’는 다차원적으로 일어나야 효과적이다. 서로 다른 분야들 간의 횡적 결집과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풀뿌리운동과 국제운동 간의 공조와 협력도 필수적이다. 상호연결되고 중첩된 인권 침해의 근본원인들을 다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책은 상호연결되고 중첩된 거시적 인권조건 형성을 위한 흐름을 만들어 내는 길밖에 없

다. 그것을 위해서는 로컬 이슈와 글로벌 이슈를 연결하는 크고 작은 수많은 조직화의 채널들이 형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제인권규범 체계와 국제정치 메커니즘의 민주적 책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개혁을 도모해야 한다(Lanham, 2018).

페미니즘에서 발전한 교차성 이론이 인종, 계급, 정체성, 차별 등 전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은 인권운동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예를 들어, 흑인들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폭력과 사회적 차별에 대항하는 50개 운동단체들의 연합체인 ‘흑인 생명을 위한 운동’(The Movement for Black Lives)의 선언문을 보라. 모든 인권침해를 가로지르는 부문간 연대, 로컬 차원과 전지구적 차원의 연대, 그리고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이보다 더 잘 응변하는 진술도 드물 것이다.

“우리는 가장 소외된 흑인들의 경험과 리더십을 고양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노력에는 여성,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다양한 성소수자, 무슬림, 전과자와 수감자, 빈곤층, 장애인, 미등록-등록 이주노동자들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 활동이 국내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가부장제, 착취적 자본주의, 군사주의, 그리고 백인우월주의에는 국경이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흑인차별 인종주의,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 전쟁, 그리고 착취의 파괴행위에 반대하는 **민국의 형제자매들과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또한 식민지배와 노예제가 초래한 역사적-현재진행형인 피해에 대한 배보상 운동에 투신하는 전세계 모든 아프리카 후손들의 노력에도 동참할 것이다.”²⁾

이와 유사한 관점을 강남순은 ‘포괄적 페미니즘’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페미니즘의 출발점은 젠더이지만 그것의 도착점은 젠더만

2) <<https://policy.m4bl.org/platform/>, 강조추가> (검색일: 2018.2.17.).

이 아니라 인종, 계층, 장애, 성적 지향 등 모든 ‘주변부인·소수자들’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평등과 정의의 사회이다. 따라서 페미니즘을 지지하면서 다른 형태의 차별에 무관심하다면 인간존재의 교차성의 구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독한 한계’를 지닐 뿐만 아니라 위협하기까지 하다. 그러므로 “현대의 페미니즘은 ‘젠더 렌즈’만이 아니라 끝없이 변하는 정황에 따라서 ‘다층적 렌즈’가 요청되며, 이에 따른 다층적 연대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긴급한 과제이다.”(강남순, 2018: 4, 강조추가)

영역교차적이고 연대적이고 글로벌-로컬 연계적인 인권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비교적 용이한 방법은 유엔의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다. 유엔은—깊은 차원에서 한계가 있긴 하지만—세계의 모든 인권 옹호자들에게 꼭 필요한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생산 기능’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구라 할 수 있다(Frezza, 2015: 85-87).

흔히 국제 차원의 인권활동은 소수의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특수 영역으로 간주되곤 한다. 그러나 인권을 지지하는 비전문가들도 유엔이 발전시킨 인권의 글로벌 규범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면화할 수 있다. 그런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차원에서 개발되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보장을 위한 새로운 개념과 방법론을 접하고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번역된 인권문헌을 통해 일반인이 국제적 인권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일반인의 평균적 인권의식과 외부세계에 대한 제한된 관심, 그리고 ‘보편적’ 개념에 대한 생소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언어적 번역 외에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번역이 한 단계 더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인권단체들은 인권에 관심이 있지만 전문적인 국제인권 규범에 거리감을 느끼는 대중을 위해 이런 문헌들을 보통사람의 눈높이로 해설하고 안내하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인권의식을 제고하는 것도 특히 청소년들에

게 장기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 이해교육원, 2015).

유엔을 중심으로 발전한 인권담론을 국내용으로 번역·번안하여 소개할 때 협소한 의미의 ‘인권’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글에서 지금까지 강조해 온 바대로, 우리의 목적인 기준이행 접근방식과 조건형성 접근방식의 통합을 위해서는 유엔이 창설될 때부터 추구해 온 3대 기둥, 즉 ①평화(안보), ②발전, ③인권을 함께 이해하고 그것들을 합목적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상상력과 비전을 배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21세기의 인권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를 위한 ‘2030 의제’의 프레임과 연결될 때에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통찰을 가져야 한다(조효제, 2016b). 이렇게 글로벌한 관점에서 인권을 인식할 때에 비로소 인권의 ‘보편적’인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V. 나오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 인권의 형성 초기에 강조되었던 친인권적 ‘사회적·국제적 질서’의 의미를 오늘날 재발견해야 할 당위와 그것의 실천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한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간주되었던 국제적 법의 지배와 기준이행식 접근만으로는 21세기의 인권 문제들에 대처하기가 역부족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출현 중인 반인권적 사회적·국제적 질서는 조건형성 접근방식의 타당성을 역설적으로 잘 보여준다.

예컨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터키, 폴란드, 헝가리 등 주요 국가들에서 등장한 권위주의적 성향의 정부, 시민사회의 위축, 비자유주의적 사회추세 등을 보면 통상적 인권운동만으로는 인권침해를 막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된다. 영국의 브렉시트, 독일과 프랑

스와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에서의 포퓰리즘 및 극우정당 약진과 같은 현상도 인권에 긍정적인 여건이 아니다.

노골적인 독재가 아니라 해도 전반적으로 억압적인 정치·사회적 상황이 형성되면 시민들의 언행은 동결되고 민주적 공론장은 축소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국제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회복과 민주주의자들의 연대, 그리고 극우파 등장의 원인을 제공한 경제·사회적 악조건의 개선이 가장 확실한 인권 담보책이 된다.

지난 10년 간 한국의 보수정권 하에서 전개되었던 인권 상황도 이와 유사했다. 당시 유엔인권이사회는 “2008년 이후 한국에서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기소와 괴롭힘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간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UN Human Rights Council, 2011: 7). 이런 상황은 표현의 자유 침해사건에 저항하는 인권활동을 넘어, 촛불혁명에 따른 거시적 정치변동에 의해서 비로소 반전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인권운동이 전문적 인권담론의 범위 내에서만 인권을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예시한다.

국제 인권NGO인 휴먼라이츠워치 역시 2018년 연례보고서에서 비슷한 점을 강조한다.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등장 중인 **반인권적 포퓰리즘의 진정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경제적 곤란과 불평등, … 전쟁, 탄압, 빈곤,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와 문화변동에 대한 불안, 엘리트와 대중 간의 사회적 분열상, 테러공격을 빌미로 외국인 혐오를 부추기는 선동가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Roth, 2017: 2, 강조추가)

인권을 촉진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사회적·국제적 질서’가 호응해 주지 않으면 인권운동은 ‘상자 안에서’ 절차적·보완적 해법을 강구하는 제한적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이 인권에 남긴 부정적 영향을 분석한 한 법학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도대체 인간의 생명이나 권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이나 평화란 무엇인가... 인권의 실현은 법적 권리의 실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조와 국제질서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민배, 1999: 54, 강조추가). 이런 통찰은 2018년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 대전환의 흐름 속에서 그 적실성이 입증된다(백낙청 외, 2018).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어하는 ‘인권운동’과, 국가보안법을 애초에 탄생시켰던 분단갈등을 해소하는 ‘인권운동’이 둘 다, 함께 필요한 것이다.

대다수 인권 옹호자들은 인권실현을 위한 적절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친인권적 사회적·국제적 질서의 필요성에 원론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논의의 수준이 추상적이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는 거시체계에 인권운동이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막연하다는 이유 때문에 이 같은 관점을 회의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고는 거시적 조건형성을 위해 인권운동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은 통상적 기준이행 방식에 의한 권리 옹호 활동에 더해, 근대 민주정치 기획의 재발견, 근본원인 분석, 언어·인식의 변화, 역사적 분석, 그리고 연대적 사회운동과 국제 인권 담론의 토착화 등을 모색함으로써 친인권적 사회적·국제적 질서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두 접근방식을 어떻게 최적화하여 통합하느냐 여부가 향후 인권학에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논문접수일: 2018. 5. 2, 논문심사일: 2018. 6. 16, 게재확정일: 2018. 6. 16)

참고문헌

- 강남순. 2018. “페미니즘의 ‘불편한 진실’ 민주주의를 확장시킨다.” 『한겨레』, 4월 21일.
- 공석기. 2013. “인권운동.” 정진성 외. 『인권 사회학』. 서울: 다산출판사.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14.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사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 서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김민배. 1999. “국가보안법·반공법과 한국인권 50년.” 『역사비평』 46: 41-56.
- 김창엽. 2013. 『건강할 권리: 건강 정의와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 미셸린 이샤이. 2005. 『세계인권사상사』. 조효제 옮김. 서울: 길.
- 박찬운. 2015. 『인권법』. 개정판. 서울: 한울아카데미.
- 백낙청 외. 2018. 『변화의 시대를 공부하다: 분단체제론과 변혁적 중도주의』. 파주: 창비.
- 안소니 기든스. 1998. 『사회구성론』. 황명주·정희태·권진현 옮김. 서울: 자작아카데미.
- 에이프릴 카터. 2007. 『직접행동: 21세기 민주주의, 거인과 싸우다』. 조효제 옮김. 서울: 교양인.
- 우르와쉬 부팔리아. 2009. 『침묵의 이면에 감추어진 역사: 인도-파키스탄 분단으로부터 듣는 여러 목소리』. 이광수 옮김. 서울: 산지니.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편). 2015.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서울: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실. 2014. 『국제인권법과 사법』. 국제인권법연구회 옮김. 국제인권법연구회.
- 이정은. 2008. “제도로서의 인권과 인권의 내면화: 1960년대 인권담론의 정치학.” 『사회와 역사』 79: 53-91.
- 장은주. 2017.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실천모델』. 서울: 피어나.
- 정인섭 편역. 2008. 『국제인권조약집』. 서울: 경인문화사.

- 제임스 W. 니켈. 2010. 『인권의 좌표』. 조국 옮김. 서울: 명인문화사.
- 조기성. 2001. 『국제법』.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조지프 히스. 2017. 『계몽주의 2.0: 감정의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김승진 옮김. 고양: 이마.
- 조효제. 2007. 『인권의 문법』. 서울: 후마니타스.
- 조효제. 2015a. “인권 달성의 근본조건.” 『민주주의와 인권』 15(3): 229-273.
- 조효제. 2015b. “한국의 반공주의와 인권.” 김동춘·기외르기 스텔·크리스토프 폴만 외. 『반공의 시대: 한국과 독일, 냉전의 정치』. 서울: 돌베개.
- 조효제. 2016a. 『인권의 지평: 새로운 인권이론을 위한 밑그림』. 서울: 후마니타스.
- 조효제. 2016b. “지속가능발전과 인권.” 『한겨레』. 1월 6일.
- 지그문트 바우만, 스타니스와프 오비레크. 『인간의 조건: 지금 이곳에 살기 위하여』. 안규남 옮김. 동녘.
- 칼 폴라니. 2009.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홍기빈 옮김. 서울: 길.
- 케빈 베일스. 2003. 『일회용 인간: 글로벌 경제시대의 새로운 노예제』. 편동원 옮김. 서울: 이소출판사.
- 홍성수. 2018a.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어크로스.
- 홍성수. 2018b. “어떤 공정성인가?” 『한겨레』. 2월 19일.

Amnesty International. 1988.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1988*.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Publications.

Bassiouni, M. Cherif. 1993.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criminal justice: Identifying international procedural protections and equivalent protections in national constitutions.” *Duke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aw* 3(2): 235-297.

Blanchfield, Patrick. 2017. “The brutal origins of gun rights.” *The New Republic* 11 December.

Cingranelli, David L. and David L. Richards. 1999. “Measuring the level,

- pattern, and sequence of government respect for physical integrity right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3(2): 407-417.
- Cox, Robert W. 1981.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0(2): 126-155.
- Evans, Tony (Ed.). 1998. *Human Rights Fifty Years On: A Reappraisal*.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Evans, Jonathan. 2007. *Hypothetical Thinking: Dual Processes in Reasoning and Judgement*. Hove: Psychology Press.
- Foot, Rosemary. 2010. “The Cold War and human rights.” In: Melvyn P. Leffler and Odd Arne Westad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ume 3: End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45-465.
- Freedman, Des. 2017. “The terror news cycle.” *London Review of Books* 24 May.
- Frezzo, Mark. 2015. *The Sociology of Human Rights: An Introduction*. Cambridge: Polity.
- Goodhart, Michael. 2016. “Introduction: Human rights in politics and practice.” In: Michael Goodhart (Ed.) *Human Rights: Politics and Pract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yes, Peter. 2017. *Why? Explaining the Holocaust*. New York: W.W. Norton.
- Hopgood, Stephen. 2013. *The Endtimes of Human Right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Walk Free Foundation. 2017. *Global Estimates of Modern Slavery: Forced Labour and Forced Marriage*.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Walk Free Foundation
- Kazin, Michael. 2017. *War Against War: The American Fight for Peace, 1914-1918*. New York: Simon & Schuster.

- Lanham, Andrew. 2018. "How to abolish war." *The New Republic* 2 January.
- Marks, Susan. 2011. "Human rights and root causes." *The Modern Law Review* 74(1): 57-78.
- Moyn, Samuel. 2010. *The Last Utopia: Human Rights in Hist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oyn, Samuel. 2018. "How the human rights movement failed."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25 April.
- Pettinger, Tom. 2015. "What is the impact of foreign military intervention on radicalization?" *Journal for Deradicalization* 5(15/16): 92-119.
- Roth, Kenneth. 2017. "The pushback against the populist challenge." In: Human Rights Watch. *Human Rights Watch World Report 2018*.
- UN Human Rights Council.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k La Rue: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A/HRC/17/27/Add.2.
- Zehfuss, Maja. 2014. "What can we do to change the world?" In: Jenny Edkins and Maja Zehfuss (Eds). *Global Politics: A New Introduction*. Second Edition. New York: Routledge.

<Abstract>

An integrative approach for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Cho, Hyo-Je *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revive the fundamental premise of the human rights advocacy at the end of the Secondary World War and to provide an alternative approach to the current prevailing approach for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By interrogating the United Nations' early endorsement of the 'conditions' for human rights and a human rights-friendly social and international order, the paper identifies several dimensions which comprise these conditions. Although human rights advocates generally understand and support the notion that human rights is best realized through the optimum synthesis of the conventional standard-implementation work and the condition-formation work, they tend to shy away from this approach on grounds of its presumed abstractness and difficulty in utilizing them in practical terms. However, the paper argues that there are some feasible ways for the human rights advocacy work to shape the 'conditions' for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The essay concludes that human rights movement and research should pursue an integrative approach to overcome the limitation associated with the conventional judicial justice-oriented approach for human rights.

Key words: conditions for human rights, standard-implementation, condition-formation, integrative approach

* SungKongHoe University